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¹⁾에 따른 사망자, 행방 불명자,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보훈부장관이 등록 결정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 민주유공자,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보훈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고, 보훈부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통해 결정하며,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함(안 제7조).
- 민주유공자, 그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등).

1) 동 명칭은 약칭이며 정식 법률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임.

II. 검토의견

1. 유사 입법의 최근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형평성 및 체계적합성 제고 필요

제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보훈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유사 입법례로 「5·18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²⁾이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서 유사 입법례의 최근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법문을 수정하여 예우 내용의 형평성과 유사 입법례와의 체계상 균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최근 개정한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가가 민주화운동자와 유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 감면진료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진료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³⁾, 대통령령

2) 동 명칭은 약칭이며 정식 법률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준보훈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유사 예우법(이하 “유사 예우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2026년 2월에 공포된 바 있음⁴⁾.

따라서, 제정안에서는 유사 예우법이 규정한 개정 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준병원제도 도입관련 내용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2조(진료) ① <u>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	제12조(진료) ① <u>민주화운동부상자(제4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u> ----- ----- ----- ----- <u>다음 각 호의</u> ----- ----- ----- -----.

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나,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은 진료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보훈병원 소재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위탁병원 진료대상 : (본인) 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유족) 75세 이상 보상금수령

4) 아래 법률은 2026.1.29.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2026.2.19.에 공포되었으며, 2026.8.20.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다.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 제1항의 의료기관 -----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민주화운동부상자 -----

-----.

⑤ -----
-----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
-----.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 2. (생략) 제13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 1. ~ 2.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의학적 재활 등) ① ----- ----- 민주화운동부상자의 ----- ----- ----- ----- ----- ②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 ----- -----
---	---

둘째, 요양지원 등의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훈부장관이 민주유공자, 배우자, 유족(부모)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시설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요양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유사 예우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 예우법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희생·공헌 정도와 더

불어 ‘생활수준조사(소득·재산)’ 결과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자녀, 사위 등)의 소득·재산수준이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근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5년 2월에 공포된바 있음⁵⁾.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유사 예우법이 규정한 개정 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는바,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요양지원 신청) ① (생 략) ② 요양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제17조(요양지원 신청)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u>가구원</u> (요양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 -----.
제18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	제18조(조사·질문 등) ① -----

5) 아래 법률은 2024.12.27.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2025.1.21.에 공포되었으며, 2025.4.22.시행됨.

* 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장관은 요양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요양지원 희망자 및 요양지원 수급자(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지원 희망자 및 요양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 희망자 및 요양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 가
구원에 -----

----- 가
구원의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가
구원이 -----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9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가
구원
이 -----

[illegible]

② 가구의원의

③ ~ ⑦ (제정안과 같음)

셋째,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등 유사 예우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누락한 사항이 있어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안 제25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법률 위반자에 대해 보훈부장관이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법 적용 대상 배제’를 규정하고 있고, 유사 예우법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유사 예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 보호법」⁶⁾ 및 「전기통신사업법」⁷⁾위반자에 대한 사항이 누락⁸⁾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6조는 민주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6)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하고 있는데, 유사 예우법에 비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
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 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 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 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 니한다.	제17조(요양지원 신청) ① (제정안과 같음)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제정안과 같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 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제정안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 ----- ----- --
가. ~ 바. (생 략)	가. ~ 바.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 의2 및 제15조의 죄

<신 설>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 ----- ----- ----- -----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 (제정안과 같음)
---	---

2. 행정입법 위임형식 수정 등 일부 자구 수정 필요

첫째, 안 제8조는 민주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행정입법 위임형식을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민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총리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u>총리령으로</u>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 <u>국가보훈부령으로</u> ----- ----- -----. 1. ~ 8. (생략) 9. ---- <u>국가보훈부령으로</u> ----- -----
--	---

둘째, 안 제21조는 보훈부장관이 양로지원을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전혀 규정되지 않은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1조(양로지원 <u>등의</u>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u>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u>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u>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u>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u>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1조(양로지원의 위탁) ① ----- ----- <u>양로지원을</u> ----- ----- <u>노인복지시설</u> ----- ----- -----. ② <u>양로지원에</u> ----- -----.

셋째, 안 제30조는 안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람’을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0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u>사람에게는</u>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 --- <u>자에게는</u> -----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